

도춘천2교 시설물(교량) 정기안전점검 용역

〈사전검토 결과 및 과업수행계획서〉

2025. 04.



Safety Inspection

시설물안전연구원(주)

제 1 장 사전검토 결과

1.1 사전검토 보고서 작성 배경 및 목적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202호, 시행 2024.04.17.)의 제8조제5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과업대상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,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고자 함

1.2 과업의 목적

본 과업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, 시설물의 물리적·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1.3 시설물 개요

(1) 위 치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54

(2) 대상 시설물 현황

건물명	연장	폭	상부구조	하부구조	준공년도
도춘천2교	21.0m	30.0m	PREFLEX BEAM	역 T 형	2011.06.01

1.4 과업수행 기간

(1) 점검일정 : 2025년 04월 21일 ~ 11월 06일(착수일로 부터 200일간)

(상·하반기 2회 실시 예정 / 상반기 - 6월 중, 하반기 - 12월 중)

1.5 지침 개정내용

[별표 4]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사항(제8조제5항 관련)

1.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: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발주할 때 법 제11조제1항, 법 제12조제1항,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2.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: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별표 10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,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.
3. 일정계획 수립
4. 조사·시험 항목의 선정
5.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 장비
6. 해당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등

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

제55조(비용의 산정기준 원칙) 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(이하 "대가"라 한다)은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업비(직접인건비, 제경비, 기술료, 직접경비)와 선택과업비(직접인건비, 제경비, 기술료, 직접경비)를 합산하여 산정한다.

- ② 대가는 정액적산방식(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)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선택과업비용은 기본과업 외에 관리주체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거나 책임기술자가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한 과업의 비용으로 제60조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.

[별표 9] 안전점검 등의 과업내용(제18조 관련)

1. 기본과업

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.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.

- 가) 자료수집 및 분석
 - 준공도면
 - 시설물관리대장
 - 기존 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
 - 보수보강이력
- 나) 현장조사
 - 주요시설, 일반시설,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
 - 콘크리트 구조물 : 균열, 누수, 박리, 박락, 층분리, 백태, 철근노출 등
 - 강재 구조물 : 균열, 도장상태, 부식상태 등
- 다) 상태평가(제 3중시설물에 한해 실시)
 - 외관조사 결과 분석
 -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(안전등급 지정)
- 라) 보고서 작성
 - 보고서 작성

2. 선택과업

- 가) 실측도면 작성(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.)

[별표 10]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요령(제19조제4항 관련)

1. 사전조사
 - 가)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
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본 지침,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.
 - 나) 과업수행계획서 작성
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.
 - 다) 서류관리
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.
2. 현장조사
현장조사는 대상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,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(결함, 손상, 열화 등) 및 구성재료(균열 폭 및 길이 등)의 변화 등을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.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,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.

※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(국토교통부고시, 제2024-202호, 시행 2024.04.17.)

○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(시설물의 종류)

3. 제3종시설물 :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시설물

○ 법 제8조(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)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·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
○ 법 제11조(안전점검의 실시)

-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○ 법 제16조(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)

-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※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법률 제 20044호, 시행 2024.01.16.)

1.6 사전검토 내용

1.6.1 대상시설물의 범위

구 분	부재명	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			금회 실시범위	비 고
		정기안전점검	정밀안전점검	정밀안전진단		
교량	상부구조	바닥판, 거더	○	○	○	
	하부구조	교대 및 교각, 주탑, 기초	○	○	○	
	받침	교량받침	○	○	○	
	케이블	케이블, 정착구, 행어밴드, 새들	○	○	○	해당없음
	2차부재	가로보 및 세로보	○	-	○	3종시설물 해당
	기타부재	신축이음, 배수시설, 난간 및 연석, 교면포장	○	○	○	
공중이용하는 부위	추락방지시설	○	○	○	○	
	도로포장	○	○	○	○	
	도로부 신축이음부	○	○	○	○	
	환기구 등의 덮개	○	○	○	-	해당없음

1.6.2 자료수집 항목

구 분		보존대상 목록	관리주체 보유현황
설계도서	공통	- 구조계산서	X
		- 토질조사 보고서	X
		- 기타 보고서	X
	설계도면	- 토목	○
		- 건축	X
		- 구조	○
시설물 관리대장		◦ 기본현황, 상세제원, 유지관리 이력	○
시공관련 자료		◦ 시공관련 자료	X
		◦ 품질관리 관련자료, 품질시험기록, 계측 관련 자료	X
		◦ 사고기록	X
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			fms등재
보수·보강 자료			X

1.6.3 정기안전점검 과업 내용

지침에 따라 과업지시서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[안전점검·진단 편]을 비교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.

과업항목	지침상 기본과업	금회 과업 내용	비용 반영
자료수집 및 분석	◦ 준공도면 ◦ 시설물관리대장 ◦ 기존 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◦ 보수·보강이력 검토분석	◦ 좌동	○
현장조사	◦ 주요시설, 일반시설,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-콘크리트 구조물 : 균열, 누수, 박리, 박락, 층분리, 백태, 철근노출 등 -강재 구조물 : 균열, 도장상태, 부식상태 등	◦ 좌동	○
상태평가	◦ 외관조사 결과분석 ◦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(안전등급 지정)	◦ 좌동	○
보고서 작성	◦ 보고서 작성	◦ 좌동	○

※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(안전점검·진단 편)(국토교통부, 국토안전관리원)

1.7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검토결과

본 과업대상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전 과업지시서, 용역 설계서의 내용이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,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과업지시서 내용	지침 및 세부지침서	설계내역서
자료수집 및 분석	◦ 준공도면 ◦ 시설물관리대장 ◦ 기존 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◦ 보수·보강이력 ◦ 내진보강 시설	◦ 좌동	◦ 기본과업 비용 반영
현장조사	◦ 주요시설, 일반시설,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- 콘크리트 구조물 : 균열, 누수, 박리, 박락, 층분리, 백태, 철근노출 등 - 강재 구조물 : 균열, 도장상태, 부식상태 등	◦ 좌동	◦ 기본과업 비용 반영
상태평가 (안전등급)	◦ 외관조사 결과분석 ◦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(안전등급 지정)	◦ 좌동	◦ 기본과업 비용 반영
보수방안	◦ 시설물의 보수범위 및 보수 우선순위 작성	-	◦ 비용 미반영
보고서 작성	◦ 보고서 작성	◦ 좌동	◦ 기본과업 비용 반영

과업지시서와 용역설계내역서 검토결과,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범위 중 기본과업에 대해서는 지침, 세부지침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검토됨

설계내역서에 별도의 추가 및 선택과업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기본과업에 준하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겠음

제 2 장 과업의 개요

2.1 과업명

도촌천2교 시설물(교량) 정기안전점검 용역

2.2 과업의 내용

본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관련자료 수집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『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(안전점검·진단편), 국토안전관리원(2024.12)』 및 『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, 국토안전관리원(2023.12)』을 중심으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하며, 필요시 적절한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(1) 자료수집 및 분석

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
① 설계도서

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·평면도, 단면도, 구조물도, 시공상세도, 구조계산서, 수리·수문계산서,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

② 시설물관리대장

③ 시공관련자료

④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

⑤ 보수·보강 이력

(2) 현장조사

① 시설물의 평면, 입면, 단면, 용도 등의 변경사항

② 구조부재의 변경사항

③ 하중조건, 기초·지반 조건,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

④ 균열발생 상태(세부지침 [공통편] 균열조사 요령 참조)

- 균열발생 위치

- 균열의 유형 및 형상(종류)

- 균열의 크기(폭, 길이 등)
- 균열의 진행 상황
- 균열부위의 누수여부

⑤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

-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·변형 상태 : 부등(부동)침하, 진동·충격 상태, 이상 체감 등
-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 상태 : 편심·집중 하중상태, 과다적재 하중상태
-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: 박리, 박락, 층분리, 백태(백화), 누수 등
-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
-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: 균열,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, 부식, 접합부, 변형·변위 등의 상태

⑥ 보수·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

(3) 조사결과 검토, 분석

- ① 외관 조사결과 정리, 기록
- ②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

(4)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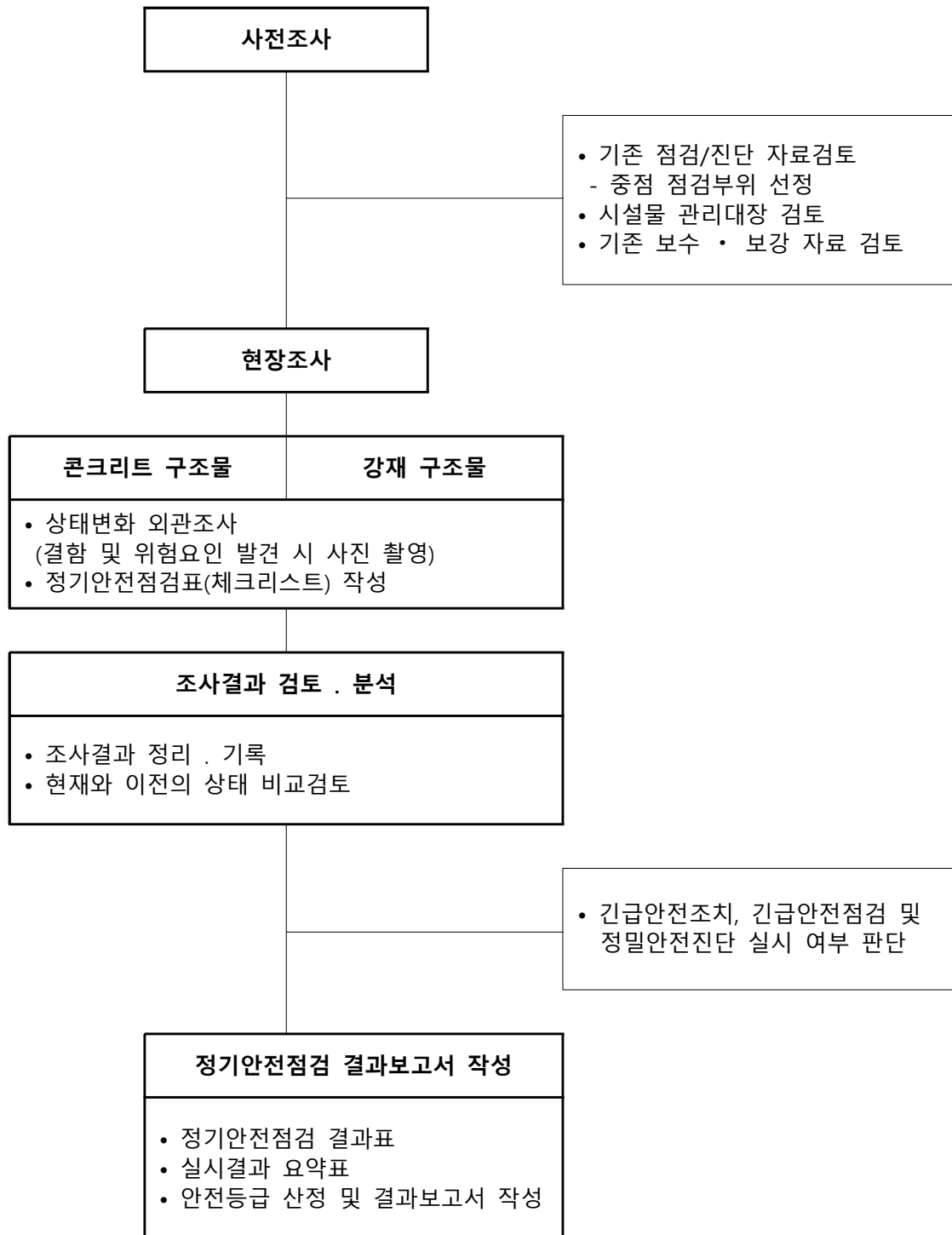
- ① 정기안전점검 결과표
- ② 실시결과 요약표
- ③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

(5) 점검보고서 작성

- ①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서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②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.
- ③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개략도와 사진을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3 장 과업수행 방법

3.1 정기안전점검 흐름도



<그림 1> 정기안전점검 흐름도

3.2 예정공정표

(1) 조사 일정계획서(현장조사)

구분	조사일자	조 사 내 용	투입장비	예상인원
계약 및 착수	04월 21일	1. 계약 및 자료수집 (설계도서 및 유지보수자료, 전차 점검자료 등) 2. 현장조사 계획 수립 3. 착수	-	1명
현장조사	04~05월 중 (상반기)	1. 내 외부 외관조사 2. 현황파악 및 유지관리상태 조사 3. 부대시설 상태조사	랜턴, 점검사다리, 균열경(자), 사진기	2~3명
	09~10월 중 (하반기)	1. 내 외부 외관조사 2. 현황파악 및 유지관리상태 조사 3. 부대시설 상태조사	랜턴, 점검사다리, 균열경(자), 사진기	2~3명

※현장조사 일정은 현장 여건상 조정될 수 있음

(2) 과업수행 세부사항

구 분	세 부 사 항	일 정
사전협의	○과업 수행 일정 협의 ○과업 수행 내용 협의 ○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협의	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전
수시협의 및 업무협의	○과업 수행 중 예기치 않은 긴급문제 발생시 ○과업 내용에 대한 긴급검토가 필요한 경우 ○기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○사전검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등	사전검토 후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기간 중 협의 후 결정
보고서 초안 제출	○점검기간 종료 7일 전	-
결과보고	○점검결과에 대한 보고 ○보수방안 설명 등	점검 완료 전 협의 후 결정
보고서 제출	○점검 결과보고 내용 반영 ○보고서 제출	상반기(6월) 하반기(11월)

※각 항목별 수행일수는 현장여건 및 작업 진행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※현장조사 일정은 현장 여건상 조정될 수 있음

※과업지시서 참조

(3) 예정공정표

과업내용	상반기				하반기					비고
	10	30	50	70	100	130	150	180	200	
◇ 현장답사 및 자료 검토 - 설계도면의 검토 - 자료수집 및 분석										
◇ 현장조사 -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외관조사										
◇ 자료 분석 및 검토 - 현장자료 검토 평가 - 관련 Data 정리										
◇ 보고서 작성 및 협의										
◇ 보고서 제출 및 제안 - 성과품 제출 및 제안										

3.3 자료수집 및 분석

현장조사 실시 전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각 대상시설물별 현황 파악(운영실태, 출입관계 확인 등) 및 설계도서(건축평면도 등), 유지관리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, 현장조사의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한다.

(1) 자료수집

- ① 자료수집 및 검토 분석(설계도면, 공사관련자료, 구조계산서, 안전진단 및 점검보고서 등 유지관리 자료)
- ② 사용실태조사 - 용도변경, 구조변경, 사용하중 등(개략적인 현황 파악)
- ③ 정기점검 계획수립
 - 시설물의 규모 및 점검의 난이도
 - 시설물의 조사범위 결정
 -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
 - 현장조사 계획

(2) 정기점검 현장조사 계획수립

- 현장조사 투입인원 계획

(3) 자료 수령 목록

- 준공도서, 구조계산서
- 기 점검보고서
- 보수공사 이력 및 자료

(4) 과업대상 시설물의 범위

구 분	부재명	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			금회 실시범위	비 고
		정기안전점검	정밀안전점검	정밀안전진단		
교량	상부구조	바닥판, 거더	○	○	○	
	하부구조	교대 및 교각, 주탑, 기초	○	○	○	
	받침	교량받침	○	○	○	
	케이블	케이블, 정착구, 행어밴드, 새들	○	○	○	해당없음
	2차부재	가로보 및 세로보	○	-	○	3종시설물 해당
	기타부재	신축이음, 배수시설, 난간 및 연석, 교면포장	○	○	○	
공중이 이용하는 부위	추락방지시설	○	○	○	○	
	도로포장	○	○	○	○	
	도로부 신축이음부	○	○	○	○	
	환기구 등의 덮개	○	○	○	-	해당없음

3.4 현장조사

현장조사는 각 조사 분야에 대하여 사업 책임자 하에 조사원과 함께 조사를 실시하며, 구조물의 상태평가가 충분할 정도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실시한다. 구조물의 상태 평가 시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정·보완하여 사용한다. 외관조사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- 구조물의 구성요소별 손상발생 여부 - 균열, 표면노후화
- 성능저하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대책의 실시여부판정
- 구조물별, 부재별 성능저하원인의 1차적 도출
- 설계도면과 실구조물의 제원 비교 - 시공오차의 조사, 평가

3.4.1 외관조사(육안조사)

(1) 정기안전점검 현장조사(외관조사) 예정 일정

현장조사 : 4~5월 중(상반기) / 9~10월 중(하반기) - 외관조사, 부대시설 상태 조사

(2) 현장조사 인원

- ① 조사팀 구성 : 2개팀 운영
- ② 조사 인원 구성 : 1개팀 1~2인으로 구성

(3) 조사방법 및 범위

구 분	조 사 방 법	조 사 범 위	비 고
과업대상 구조물 전체	-손상 내용(종류, 범위) 도면 기재 -손상부위 사진촬영	-구조물 외관 전체 -정기안전점검 범위에 준하는 보조 부재, 부속시설 등	

(4) 조사항목

- ① 콘크리트 균열 : 구조체, 비구조체를 구분하고 균열 폭, 길이, 형상, 면적률 등을 조사함(균열자, 균열경, 줄자 등)
- ② 표면열화 : 콘크리트 박리/박락, 재료분리, 철근노출, 백태 등을 조사하며, 그 원인을 판단함
- ③ 누 수 : 누수정도, 누수부위 및 원인 등을 조사, 판단하여 보수방안을 수립함
- ④ 하중조사 : 과적재하중, 용도변경 등 조사
- ⑤ 강 재 : 접합부 조사, 도장, 발청상태 등
- ⑥ 보수 . 보강 실태 조사
- ⑦ 계절별 주요점검항목 참조
- ⑧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3.4.2 정기안전점검 방법

- (1)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.
- (2) 점검자는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·손상 등을 발견하고,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.

- (3)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관리주체는 「법」 제22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(4) 보고서에는 육안조사 및 상태평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·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(5) 정기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.
- (6)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조치,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3.5 조사결과 검토, 분석

- (1) 외관 조사결과 정리, 기록
- (2)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
- (3) 긴급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판단

3.6 보고서 작성

- (1) 정기안전점검 결과표, 정기안전점검 Check List, 실시결과 요약표 작성
- (2) 점검보고서 작성

3.7 성과물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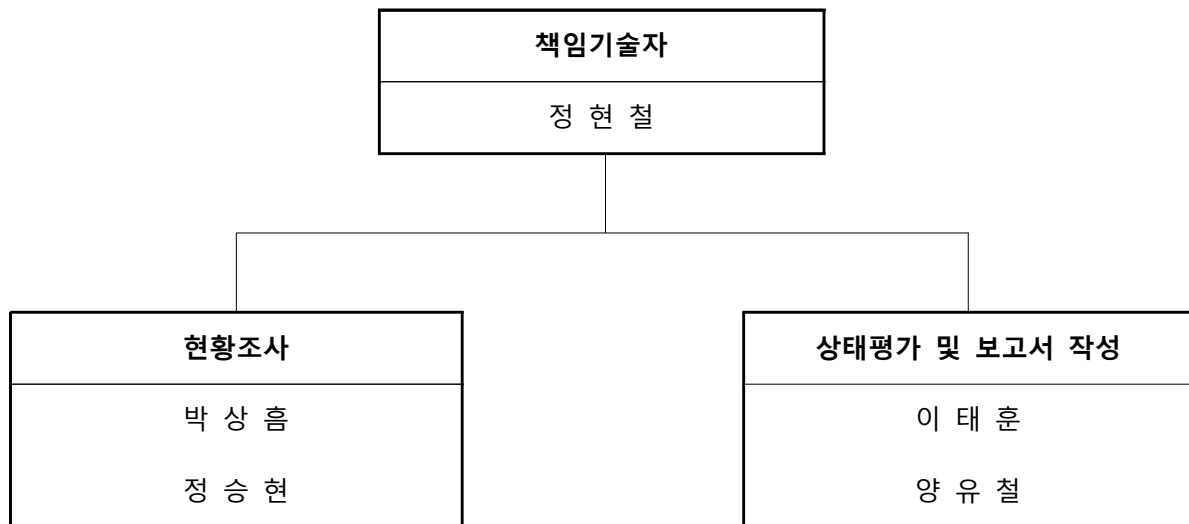
과업지시서, 지침 및 세부지침 등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) 정기안전점검 보고서(부록포함) | 3부 |
| 2) USB보고서(PDF파일) | 1SET |
| 3)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(FMS) 등록 | |

제 4 장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

4.1 과업수행 조직

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고 점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


※현장조사 시 조직표 외 추가 인원이 투입될 수 있음

- 조사팀 구성 : 2개팀 운영
- 조사 인원 구성 : 1개팀 1~2인으로 구성

4.2 인원구성 기준

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방안 수립 업무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물론 시설물의 효용증진 및 안전 확보와 직결되므로 이 분야의 기술과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들로 인적자원을 구성한다.

구 분	내 용
책임기술자	해당분야 기술사로서 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술자
참여기술자	해당 분야의 오랜 기술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특급, 고급, 중급, 초급기술자로 편성

분야별	참여기술자			비고
	참여과업내용	성 명	자격종목 및 등급	
책임기술자	업무총괄	정 현 철	토목기사 토목분야 고급기술자	
참여기술자	정기안전점검	박 상 흙	토목기사 토목분야 고급기술자	
"	정기안전점검	이 태 훈	토목분야 초급기술자	
"	정기안전점검	정 승 현	토목기사 토목분야 초급기술자	
"	정기안전점검	양 유 철	토목기사 토목분야 초급기술자	

제 5 장 안전 관리계획 및 보안대책

5.1 안전관리 조직구성

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,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과업수행 중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 본 과업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한다.

5.2 안전관리자의 임무

- (1) 안전 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
- (2) 건설안전 관리법 제33조의 방호장치, 건설안전 관리법 제34조의 기계, 기구 및 설비, 건설안전 관리법 제35조의 보호구 등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
- (3)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
- (4) 현장순회 점검 및 지도
- (5)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

5.3 안전상의 조치

- (1) 용역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
- (2)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
- (3) 용역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5.4 안전관리 세부내용

5.4.1 작업 시작 전 준비작업 과정(정기안전점검 현장 준비, 안전조치 실태확인)

- 점검현장 단위별 인원, 장비, 자재 적정배치여부, 투입 장비 상태점검

5.4.2 작업 시행 중 이행실태 확인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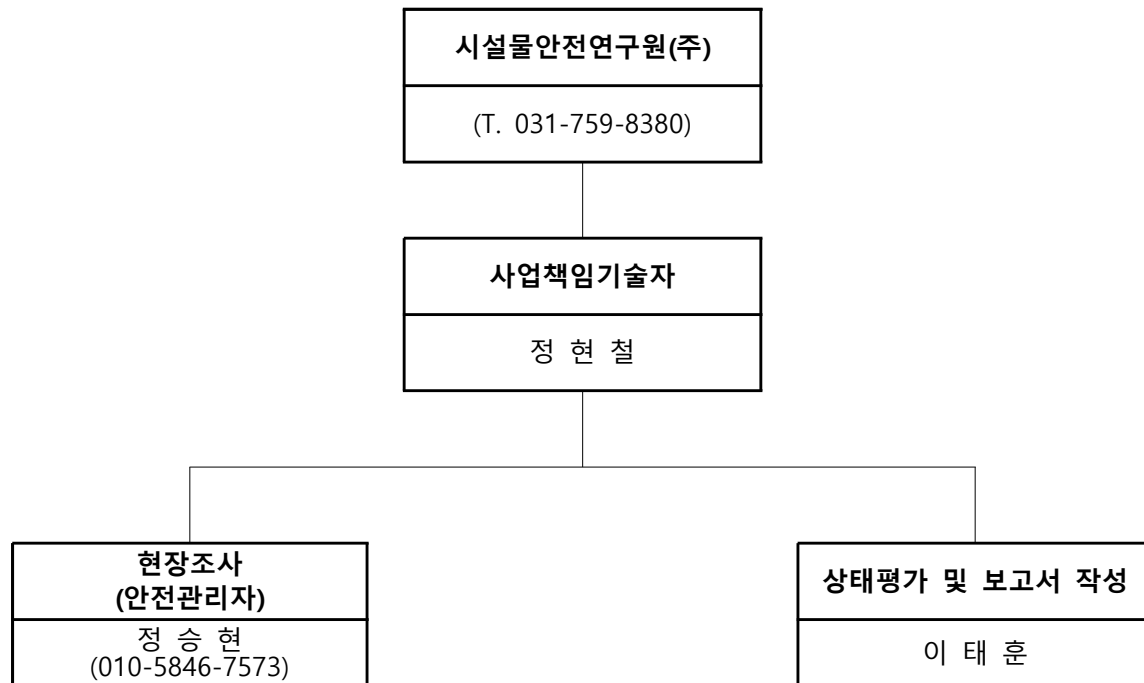
-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
- 정기안전점검 진척 상황 수시 정보교환
- 점검 실시 후 마무리 상태점검, 확인

5.4.3 안전관리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

(1) 비상연락망

- 발주부서 : 성남시 중원구청 녹지공원팀 한규리 031-729-6451
- 시설물안전연구원(주) : 031-759-8380

(2) 안전관리 조직표



5.5 보안대책

본 과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비밀 누설 및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한다.

- (1) 용역자는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취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.
- (2) 용역자는 용역의 착수와 동시 또는 완료한 후라도 본 성과품에 대한 과업수행자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.
- (3) 점검 후 점검자의 보안교육 실시하고 관계인외 출입금지를 시키며, 캐비넷 도면함 등의 잠금장치를 확인한다.